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8. 24 선고 2021가단22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영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이윤선, 황윤상, 김재연

변론 종결2023. 7. 20.

판결 선고2023. 8.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D 사이에 2020. 6.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 D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6. 19. 접수 제16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130,94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C은 E, F, G과 함께 H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뷔페 서비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자 D의 형이다.

나. 원고는 H과 사이에 물품공급 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2020. 6. 19. 기준 원고의 미수채권액은 180,829,100원이고, 원고와 H의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2020. 12. 9. 기준 원고의 미수채권액은 178,537,200원이다.

다. 원고는 D, C, E, F, G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350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7.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37,2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부터 피고 D은 2021. 3. 26.까지, 피고 F, C은 2021. 3. 29.까지, 피고 E는 2021. 4. 22.까지, 피고 G은 2021. 5. 12.까지는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와 C, D, I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받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20. 6. 19.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 D의 각 1/4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각 4,000,000원을, 2020. 6. 24. 잔금 각 6,500,000원을 C, D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9,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6. 19. 접수 제1622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D과 형제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D의 각 1/4 지분 가액의 합계는 189,943,0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18,000,000원 중 2/4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30,943,000원(=위 지분 가액 합계 189,943,000원-피고가 승계한 피담보채무액 5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30,9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6. 19. 기준 H에 대하여 180,829,1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C, D은 H의 공동사업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D에 대하여 180,829,100원 상당의 연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C, D의 유일한 재산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C,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먼저 C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 K에 대한 예금채권 48,882,596원, M 주식 300주 10,965,000원(=300주×2020. 6. 19. 기준 종가 36,55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실질적인 가액 65,471,500원(=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가액 합계 94,971,500원-피담보채무액 118,000,000원×1/4 지분)으로서 합계 125,319,0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적극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미달하는 사실,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0,500,000원은 위 지분의 실질적인 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D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 J에 대한 예금채권 22,538,547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실질적인 가액 65,471,500원(=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가액 합계 94,971,500원-피담보채무액 118,000,000원×1/4 지분)으로서 합계 88,010,0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적극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미달하는 사실,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금액 합계 10,500,000원은 위 지분의 실질적인 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D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C, D에게 5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D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영업하던 서울 구로구 N 지상 건물 중 1~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E로 보일 뿐이어서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C와 D에게 5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D, I의 공유여서 일부 공유자인 C,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C, D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C, D이 위 지분의 실질적인 가액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위 지분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9개월만인 2021. 3. 16. H이 폐업한 점, C, D이 피고와 형제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C, D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H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 D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다른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C, D의 자력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인수도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인석

별지